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제 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이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기관에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표1]로 규정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부 기준에 충족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등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 나.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2

조 제3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 등에 자료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4항·제5항)

라. 심의위원회는 기관별로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제2항)

마. 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등의 대표가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 사유를 ① 위원 또는 배우자 등이 안전의 당사자 등이거나, ②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 등이거나, ③ 위원이 안전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로 정함.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바. 기관 등의 대표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로 정하고,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6항·제

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3.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기관별로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등의 대표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근무한 자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기관등의 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해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의 효율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기관별로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등의 대표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근무한 자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기관등의 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해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u>제2조의2</u> ~ <u>제2조의4</u> (생략)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u> <u>제2조의3</u> ~ <u>제2조의5</u> (현행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와 같음)
---	---

[별표 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문학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제2호가목·다목 및 제3호가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 또는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단편 소설의 경우는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문학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전시한 실적을 합하여 총 5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총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반을 1장 이상 낸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총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공연에서 안무를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상영영화(「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말한다. 이하 이 호·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총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총 3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본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에 대중문화 비평을 총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을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총 5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총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고: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 발표가 기준인 경우 해

당 기간 동안 1편을 발표했다면 0.2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문학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호나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단편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전시회에 1편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무용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연극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영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1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다), 사진, 건축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총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로 참가한 경우는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2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으로 총 2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총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총 3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고: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참여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에 참여했다면 3분의 1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1)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다), 사진, 건축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음악, 국악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용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연극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영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6) 연예(演藝)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7) 만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